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심위 심의대상에 거짓 정보 포함 등 〉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90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방심위 심의대상에 거짓 정보 포함 등(안 제21조 등)	4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신설 등(안 제25조의2 등)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고동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3. 24.

다. 회 부 일 : 2025.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규정 제정·공표의 대상에 기존의 명예훼손 사항 외에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를 추가함(안 제21조제4호 신설, 제24조제2호).
- 나.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와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등의 제재 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 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통하여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마.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하는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따르지 않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심위 심의대상에 거짓 정보 포함 등(안 제21조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거짓 정보에 대한 심의와 제재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1조는 방심위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심의를 직무로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심의규정의 제정·공표(안 제24조), 제재조치(안 제25조) 등의 권한사항을 정비함.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 9. (생략)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2조에 따른 <u>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심의</u> 5. ~ 10. (현행 제4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심의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 ----- -----

현행	개정안
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생략)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신설> ② ~ ⑦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제한과 해당 정보의 삭제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제한 ②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되고(안 제21조제4호), 이

에 대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하며(안 제24조제2호),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거짓 정보에 대해 삭제나 제한 등의 제재조치(안 제25조제1항제3호)를 취할 수 있게 됨.

○ 정보생산과 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이나, 일반 국민의 의사개진에 대한 삭제나 제한 등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 그럼에도 “거짓 정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칫 규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 어떠한 정보가 진실인지 허위인지 객관적으로 판단·결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존한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보임.

○ 또한,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44조의7 등에서 권리침해정보 및 불법정보 등 유통금지정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해 사업자의 의무 등을 두고 있어, 조직법적 성질을 가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거짓 정보’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법익 침해에 대한 고려 없이 심의대상

에 포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거짓 정보를 법령에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 범위,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진흥원)는 ‘거짓정보’ 심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정의의 모호성, 권한 남용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 위반 소지가 존재하고,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위한 명령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임.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신설 등(안 제25조의2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방통위 명령에 따른 불법·거짓정보 관련 예방·조치 서비스나 시스템 수립의무, 이용자의 삭제·제한 요청에 대한 조치의무 등을 신설하고(제25조의2) 이를 위반시 방통위가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나. 검토 의견

- 개정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거짓정보의 유통을 예방하고, 삭제·제한하기 위한 서비스나 시스템의 체계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며(안 제25조의2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거짓정보에 대한 삭제·제한 등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4시간 이내에 자체심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련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5조의2제2항),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30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무 신설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거짓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불법·거짓정보로 인한 이용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측면은 있을 것이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이용자 수나 매출액 등 사업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국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방통위의 서비스나 시스템 체계의 수립 및 시행 명령에 대한 이행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중소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 집행상 국외 사업자 보다는 국내 사업자에게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내외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둘째, 거짓정보에 대한 정의나 판단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거짓정보의 유통 예방, 판단 및 조치까지의 모든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지우고 이용자의 입장에서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셋째, 이용자의 이의제기시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시스템 체계 수립”에 대한 내용이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위반 시 30억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이에 대한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취지에 동의하나, 법체계상 타법(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하는 것, 대상 사업자 대략의 범위를 정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이의제기 대상이나 절차에 등에 대한 수정과 함께 형평성에 맞도록 과태료를 조정할 필요¹⁾가 있다는 의견임.

1) (전기통신사업법)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기술적·관리적조치 미이행시 5천만원 이하,

- 법무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30억원의 과태료는 유사입법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한국인터넷진흥원)는 서비스·시스템 수립 명령은 영업의 자유 침해 및 국내외 역차별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용자의 이의제기 신속처리의 경우 게재자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30억원의 과태료는 과도하다는 의견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4시간 이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타법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정합하지 않으며, 30억원 과태료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임시조치 등 기존 법체계와의 중복 또는 충돌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6

(정보통신망법) 방통위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